물질안전보건자료

B-Cool MC 640 CI

MSDS 번호AA04104-000116400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1항에 의거함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B-Cool MC 640 CI

제품 코드 : 11640-02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알려진 사용방법
산업 용도로만 사용 금속 가공유체

권장되지 않는 사용방법
소비자 사용.

다. 제조자 : BLASER SWISSLUBE AG
Winterseistrasse 22
CH-3415 Hasle-Rüegsau
스위스
전화: +41 (0)34 460 01 01
이메일주소: contact@blaser.com

수입자/ 유통업자 : Blaser Swisslube Korea Inc.
#1909 T-Tower
21, Yangji-ro, Gwangmy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4345
전화: +82 2 785 7228
이메일주소: korea@blaser.com

SDS 관리 책임자 이메일 주소 : reach@blaser.com

긴급전화번호 : +82 2 3479 8401 (7일/24시간)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3
이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

신호어 : 경고

유해·위험 문구 :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412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예방조치 문구

예방 : P280 -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 완전히 씻으시오.

2. 유해성·위험성

대응	:	P302 + P352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62 + 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05 + P351 + P338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37 + 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시오. P321 - (라벨 참조). 처치를 하시오.
저장	:	해당 없음.
폐기	:	P501 - 내용물과 용기는 모든 지역, 지역, 국가 및 국제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알려진 바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 / 혼합물 : 혼합물

다른 식별 수단 : 자료 없음.

성분명	분류	식별자	%
모노에탄올아민	금속부식성 물질 - 분류 1 급성 독성 (경구) - 분류 4 급성 독성 (경피) - 분류 4 급성 독성 (흡입) - 분류 4 피부 부식성 - 분류 1B 심한 눈 손상성 - 분류 1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3	CAS: 141-43-5	≤7
알코올, C16-18, 에톡시화 프로폭시화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3	CAS: 68002-96-0	≤7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3	CAS: 124-68-5	≤5
지방산, 톨 오일, 아크릴산과의 반응 생성물	피부 자극성 - 분류 2 심한 눈 손상성 - 분류 1	CAS: 53980-88-4	≤5
인산, C11-14-이소알킬 에스테르, C13-rich	피부 자극성 - 분류 2 심한 눈 손상성 - 분류 1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2	CAS: 52933-07-0	≤5
2-아미노부탄-1-올	인화성 액체 - 분류 4 금속부식성 물질 - 분류 1 급성 독성 (경구) - 분류 4 피부 부식성 - 분류 1 심한 눈 손상성 - 분류 1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 분류 1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3	CAS: 96-20-8	≤2
소듐 피리싸이온	급성 독성 (경구) - 분류 4 급성 독성 (경피) - 분류 4 급성 독성 (흡입) - 분류 3 피부 자극성 - 분류 2 눈 자극성 - 2A 피부 과민성 - 분류 1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 분류 1	CAS: 3811-73-2	<0.1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 분류 1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2		
N-뷰틸벤즈아이소싸이아졸린-3-온	피부 부식성 - 분류 1B 심한 눈 손상성 - 분류 1 피부 과민성 - 분류 1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 분류 1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1	CAS: 4299-07-4	<0.1

추가 정보 :

중화 제품 : REACH 부속서 V에 따라 이온 쌍의 균형, 4

공급자의 현재 지식범위 및 적용가능한 농도내에서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어 이 항에 보고되어야 하는 추가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작업장 노출한계의 자료가 있다면 8항에 기술되어 있음.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즉시 다량의 물로 가끔 윗 눈꺼풀과 아랫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씻어낼 것. 적어도 10분 동안 계속 세척할 것. 콘택트 렌즈의 유무를 확인하여,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거할 것.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다량의 물로 오염된 피부를 씻을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을 것. 적어도 10분 동안 계속 세척할 것.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의복은 재착용 전에 세탁할 것. 신발은 재사용 전에 완전히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다. 흡입했을 때 :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않도록 할 것. 호흡하지 않거나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호흡정지가 일어난 경우, 훈련 받은 사람이 인공호흡 또는 산소 공급을 할 것.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면 구조 제공자가 위험할 수 있음. 만약 좋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심각하면 의료 조치를 받을 것. 만약 의식이 없으면, 회복자세(recovery position)를 취하게 하고 즉시 의료 조치를 받을 것. 기도 확보를 유지할 것. 옷깃, 넥타이, 벨트, 허리띠 등과 같이 조이는 것들을 느슨하게 할 것. 화재시 분해제품을 흡입하면, 증상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음. 노출된 사람은 48시간 동안 의료진의 감시가 필요함.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 입을 물로 세척할 것. 의치를 하고 있다면 제거할 것. 물질을 삼켜서 노출된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 마시게 할 것. 노출된 사람이 구토를 하면서 울렁거림을 느끼면 위험하므로 그만둘 것. 의료요원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구토을 유도하지 말 것.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머리를 낮게 유지하여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게 할 것. 만약 좋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심각하면 의료 조치를 받을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입을 통하여 아무 것도 주지 말 것. 만약 의식이 없으면, 회복자세(recovery position)를 취하게 하고 즉시 의료 조치를 받을 것. 기도 확보를 유지할 것. 옷깃, 넥타이, 벨트, 허리띠 등과 같이 조이는 것들을 느슨하게 할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화재시 분해제품을 흡입하면, 증상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음. 노출된 사람은 48시간 동안 의료진의 감시가 필요함.

특별 취급 : 특정한 치료법은 없음.

응급 처치자의 보호 :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면 구조 제공자가 위험할 수 있음.

유해성 정보를 참조할 것. (11항)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 주변 화재에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

부적절한 소화제 : 알려진 바 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화재 및 가열되면, 압력은 증가하며 용기는 폭발할 것 임. 본 물질은 수생 생물에 유해하며 장기적으로 영향이 지속됨. 이 물질로 오염된 소화수가 다른 수로, 하수도, 배수구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분해산물은 다음과 같은 물질을 포함할 수 있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소방관은 적절한 보호 장비와 전면 정압 공기 공급형 호흡기가 있는 개인호흡기(SCBA)를 착용할 것.

소방관을 위한 구체적인 주의사항 : 화재가 날 경우 즉시 모든 사람을 사고 부근으로부터 퇴거시키고 현장을 격리할 것.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주변지역을 벗어날 것. 필요하지 않거나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막을 것. 유출된 물질에 접촉하거나 밟지 말 것.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않도록 할 것. 충분히 환기할 것.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유출된 물질이 분산되거나 유수가 토양, 수로, 배수 및 하수와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 제품이 환경 오염(하수, 수로, 토양, 공기)을 발생시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할 것. 수질오염물질. 만약 대량으로 누출되면 환경에 유해할 수 있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 : 위험이 없으면, 누출을 정지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할 것. 비활성 물질로 흡수하여, 적절한 폐기용 용기에 담을 것. 인가된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폐기할 것.

대량 누출 : 위험이 없으면, 누출을 정지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할 것. 유출물에 접근할 경우에는 풍상(風上)에서 행할 것. 하수, 수로, 지하 또는 밀폐된 장소로 유입시키지 말 것. 유출물을 폐수처리공장으로 보내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할 것. 인가된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폐기할 것. 오염 흡수 물질은 누출 제품과 동일하게 유해함. 누출된 물질을 비인화성 흡착 물질, 예를 들면 모래, 흙, 질석, 규조토로 흡착하여 용기에 담은 다음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방제 조치 :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8항 참조). 섭취하지 말 것. 눈, 피부 및 의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않도록 할 것.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원래의 용기 또는 혼촉 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진 승인된 대체 용기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밀폐하여 보관할 것. 빈 용기가 제품 잔류물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유해할 수 있음. 용기를 재사용하지 말 것.

일반적 산업 위생에 관한 조언 : 이 물질을 취급, 저장, 가공하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는 것은 금지됨. 작업자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을 것. 음식물 섭취 장소로 들어가기 전 오염된 의복 및 보호 장비를 제거할 것. 위생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는 8항을 참조.

7. 취급 및 저장방법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다음 온도 사이에서 보관할 것: 0 내지 40℃ (32 내지 104°F). 보관수명: 24 개월.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보관할 것. 건조하고 서늘하며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여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며, 배합금지 물질 (10항을 참조) 과 음식 및 음료로부터 멀리 둘 것. 용기는 사용 전까지 밀봉해 둘 것. 개봉한 용기는 주의 깊게 다시 봉한 다음 누출을 방지를 위해 세워 보관할 것. 라벨이 없는 용기에 보관하지 말 것. 적절한 봉쇄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 취급이나 사용 전에 섹션 10의 격리보관 물질을 확인하십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제어 변수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모노에탄올아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한국, 1/2020)
STEL 15 분: 6 ppm.
TWA 8 시간: 3 ppm.

생물학적 노출 지수

알려진 노출 지수가 없습니다.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관리에 충분한 일반 배기장치를 사용할 것.

환경 노출 관리 : 배기 또는 작업 공정 설비로부터의 배출이 환경 보호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배출물질을 허용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흄 세정기 (fume scrubbers), 필터, 또는 가공 시설에 대한 공학적 개조가 필요할 것임.

다. 개인 보호구

호흡기 보호 : 통상의 또는 본래의 제품 사용 조건에서는 호흡보호구가 필요하지 않음. 작업자가 노출 한도 이상의 농도에 노출될 경우 승인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눈 보호 : 위해성 평가 결과, 액체가 튀거나 미스트, 가스, 분진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필요가 있으면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보안경을 착용할 것. 접촉이 가능한 경우, 다음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평가가 좀 더 강한 수준의 보호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화학물질 튀김 방지용 안경.

손 보호 : 위험 평가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면, 화학 제품을 취급할 때, 승인 기준에 부합되는 내화학성, 불침투성 장갑을 언제나 사용할 것. 장갑 제조자가 명시한 변수를 고려하여, 사용중 장갑이 그 보호 특성을 계속 유지하는지 확인할 것. 장갑 물질에 대한 침투 시간이 장갑 제조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함. 여러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장갑의 보호시간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음. EN374에 따라 테스트된 적합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니트릴고무 장갑. 두께 0.3 mm (최소) .

신체 보호 : 제품을 취급하기 전에 인체 개인 보호 장비는 실제 작업 성능과 관련된 사고 위험을 기초로 선택하고 전문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위생상 주의사항 : 이 화학 제품을 취급한 다음 작업 종료 때,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 손, 팔, 얼굴을 충분히 씻을 것. 의복에 잠재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염된 의복은 재착용 전에 세탁할 것. 눈 세척 장소와 안전 샤워 시설이 작업 장소와 가깝도록 확실히 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모든 성질에 대한 측정 조건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표준 온도 및 압력입니다.

가. 외관

물리적 상태 : 액체.

색 : 갈색.

나. 냄새 : 아민계

다. 냄새 역치 : 자료 없음.

라. pH : 8.8 내지 9.6 [농도 (% w/w): 5%]

마. 녹는점/어는점 : 자료 없음.

유동점 : -37℃ (-34.6°F)

9. 물리화학적 특성

바. 끓는점, 초기 끓는점 및 끓는 범위	:	자료 없음.
사. 인화점	:	개방식: 해당 없음.
발화점	:	자료 없음.
아. 증발 속도	:	자료 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 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 없음.
카. 증기압	:	자료 없음.
타. 용해도	:	
물에 대한 용해도	:	자료 없음.
파. 증기밀도	:	자료 없음.
하. 비중	:	자료 없음.
밀도	:	0.964 g/cm³ [20℃ (68°F)]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해당 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	자료 없음.
더. 분해 온도	:	자료 없음.
러. 점도	:	다이나믹 (상온): 자료 없음. 동점도 (상온): 자료 없음. 동점도 (40℃ (104°F)): 194 mm^2/s (194 cSt)
유동 시간 (ISO 2431)	:	자료 없음.
머. 분자량	:	해당 없음.

입자 특성

중간 입자 크기	:	해당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보관수명: 24 개월.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일반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 위험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음.
나. 피해야 할 조건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정상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 유해한 분해 산물이 발생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 없음.

잠재적 급성 건강 영향

흡입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먹었을 때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과다 노출 징후/증상

흡입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먹었을 때	: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
자극
홍조

눈에 들어갔을 때 :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
통증 또는 자극
눈물이 나옴
홍조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제품/성분명	결과
모노에탄올아민	**쥐 - 경구 - LD50** 1720 mg/kg
-	**토끼 - 경피 - LD50** 2504 mg/kg
알코올, C16-18, 에톡시화 프로폭시화	**쥐 - 경구 - LD50** >2000 mg/kg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토끼 - 경피 - LD50** >2000 mg/kg
지방산, 톨 오일, 아크릴산과의 반응 생성물	**쥐 - 경구 - LD50** 6176 mg/kg 독성 효과: 폐, 흉부 또는 호흡 - 호흡곤란 위장 - 위염 Gastrointestinal - 소장에서 발생하는 궤양 또는 출혈
인산, C11-14-이소알킬 에스테르, C13-rich	**쥐 - 경구 - LD50** >2000 mg/kg
-	**쥐 - 경피 - LD50** >2000 mg/kg
소듐 피리싸이온	**쥐 - 암컷 - 경구 - LD50** 1208 mg/kg
N-뷰틸벤즈아이소싸이아졸린-3-온	**쥐 - 경피 - LD50** >2000 mg/kg
-	**쥐 - 경구 - LD50** 4267 내지 4732 mg/kg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제품/성분명	결과
모노에탄올아민	**토끼 - 피부 - 보통정도의 자극성 물질** 적용된 양/농도: 505 mg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심각한 눈 손상/눈 자극

제품/성분명	결과
모노에탄올아민	**토끼 - 눈 - 강한 자극원** 적용된 양/농도: 250 ug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호흡기 부식/자극

자료 없음.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호흡기 또는 피부 감작

11. 독성에 관한 정보

자료 없음.

피부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호흡기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CMR(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자료 없음.

생식세포 돌연변이원성

자료 없음.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발암성

자료 없음.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생식독성

자료 없음.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제품/성분명	결과
소듐 피리싸이온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신경계) - 분류 1

흡인 유해성

자료 없음.

만성 징후와 증상

자료 없음.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일반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발암성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변이원성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생식독성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독성의 수치적 척도

급성 독성 추정치

11. 독성에 관한 정보

제품/성분명	경구 (mg/kg)	경피 (mg/kg)	흡입 (가스) (ppm)	흡입 (증기) (mg/l)	흡입 (먼지 및 미스트) (mg/l)
B-Cool MC 640 CI	>2000	>2000	N/A	57.8	N/A
모노에탄올아민	1720	1100	N/A	11	N/A
알코올, C16-18, 에톡시화 프로폭시화	2500	N/A	N/A	N/A	N/A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N/A	2500	N/A	N/A	N/A
지방산, 톨 오일, 아크릴산과의 반응 생성물	6176	N/A	N/A	N/A	N/A
인산, C11-14-이소알킬 에스테르, C13-rich	2500	2500	N/A	N/A	N/A
2-아미노부탄-1-올	500	N/A	N/A	N/A	N/A
소듐 피리싸이온	500	1100	N/A	N/A	0.5
N-뷰틸벤즈아이소싸이아졸린-3-온	2500	2500	N/A	N/A	N/A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제품/성분명	결과
모노에탄올아민	**급성 - LC50 - 담수** 물고기 - Bluegill - *Lepomis macrochirus* 크기: 40 내지 50 mm 329160 µg/l [96 시간] 효과: 사망
-	**만성 - NOEC** 물고기 1.2 mg/l [30 일]
-	**만성 - NOEC** 물벼룩 0.85 mg/l [21 일]
알코올, C16-18, 에톡시화 프로폭시화	**LC50** OECD 203 물고기 >100 mg/l [96 시간]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LC50** 물벼룩 193 mg/l [48 시간]
인산, C11-14-이소알킬 에스테르, C13-rich	**EC50** 조류 - 조류 150 mg/l [72 시간]
-	**EC50** 물벼룩 - 물벼룩 6.3 mg/l [48 시간]
-	**LC50** 물고기 24 mg/l [96 시간]
-	**NOEC** 조류 - 조류 110 mg/l
2-아미노부탄-1-올	**LC50** 물고기 - 금붕어 270 mg/l [4 일]
-	**NOEC** 조류 0.11 mg/l [4 일]
소듐 피리싸이온	**EC50** 물벼룩 0.0088 mg/l [48 시간]
-	**EC50** 조류 0.0012 mg/l [72 시간]
N-뷰틸벤즈아이소싸이아졸린-3-온	**EC50** 물벼룩 0.093 mg/l [48 시간]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EC50 조류 0.45 mg/l [72 시간]
–	LC50 물고기 0.15 mg/l [96 시간]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 없음.

결론/요약[제품] : 자료 없음.

제품/성분명	수중 반감기	광분해	생물 분해성
2-아미노부탄-1-올	–	93%; <28 일	쉬움

다. 생물 농축성

제품/성분명	$LogP_{ow}$	BCF	잠재적 생물 농축성
모노에탄올아민	-1.31	–	낮음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0.63	–	낮음
2-아미노부탄-1-올	-0.45	–	낮음

라. 토양에서의 이동성

토양/물 분배 계수 :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가능한 폐기물 생성을 피하거나 최소로 할 것. 이 물질과 용액, 부산물은 언제나 그 지역의 환경보호법과 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이나 쓰고 남은 제품은 허가된 폐기물 외주업자를 통하여 처리할 것. 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모든 관련 정부기관의 의무사항을 준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절대로 하수로 폐기되어서는 안됨. 사용된 포장용기는 재활용 되어야 함. 소각 또는 매립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함.

나. 폐기시 주의사항 : 제품 및 그 용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세척되거나 행궈지지 않은 빈용기를 취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함. 빈 용기 또는 라이너에 제품 잔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음. 유출된 물질이 분산되거나 유수가 토양, 수로, 배수 및 하수와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UN	IMDG	IATA
가. 유엔 번호	규제되지 않음.	Not regulated.	Not regulated.
나. 유엔 적정 선적명	규제되지 않음.	Not regulated.	Not regulated.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규제되지 않음.	Not regulated.	Not regulated.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라. 용기등급	규제되지 않음.	Not regulated.	Not regulated.
마. 환경 유해성	해당없음.	No.	No.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사용자의 구역 내에서의 운반:** 항상 밀폐 용기에 담아 똑바로 세워 안전하게 운반할 것. 사고가 발생하거나 누출되었을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품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주지시킬 것.

IMO 협정에 따른 벌크 운송 : 자료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조 등의 금지)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조 등의 허가)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유해약물 : 해당 없음.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다음 성분들은 작업노출기준이 있음:
monoethanolamin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에탄올아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금속가공유:미네랄오일미스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에탄올아민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11항(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금지물질)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9조 허가대상 후보물질(K-Reach 제25조)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15. 법적 규제현황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허가 대상(한국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제25조)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유독물질의 지정) : 해당 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한물질)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사고대비물질)

등재되어 있지 않음.

환경부고시제2021-51호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및허가물질의규정수량에관한규정

성분명	규제 상한 용량	규제 하한 용량
2-n-부틸-벤조[d]이소티아졸-3-온	400 톤	20 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다음과 같은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 2-n-Butyl-benzo[d]isothiazol-3-one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관련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제 규정

화학 무기 금지 협약 목록 지정 I, II & III 화학물질

목록명	성분명	상태
스케쥴 III	트리에탄올아민	등재되어 있음

몬트리올 프로토콜

등재되어 있지 않음.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PIC)

등재되어 있지 않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중금속에 대한 UNECE 오르후스 의정서

등재되어 있지 않음.

인벤토리 등재 여부

한국 : 결정되지 않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 화학 물질의 독성 영향 등록부
- 미국환경보호국 ECOTOX

나. 최초 작성일자/최종 개정일자 : 2026년07월17일

다. 버전 : 1.03

인쇄일 : 2026년07월17일

작성자 : Product Stewardship Blaser Swisslube AG

라. 기타

IP346:

함유된 정제 광유는 표지 의무에서 면제되었음IP346 에 따라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CA)의 함량은 3% 이하임(DMSO-extract)

16. 그 밖의 참고사항

◤ 이전 호와 변경된 정보를 나타냅니다.

약어 해설 : ATE = 급성독성 추정치
BCF = 생물 농축 계수
GH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IATA = 국제 항공 운송 협회
IBC = 중형산적 용기
IMDG =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
LogPow = 물/옥탄올 분배계수의 로그값
MARPOL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8년 의정서 ("Marpol" = 해양오염물질)
N/A = 자료 없음
SGG = 분리 그룹
UN = 국제 연합

주의

여기에 기술된 정보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기 담긴 정보에 대한 정확성 혹은 완전성에 대해 위에 언급된 공급자나 그 자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질의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모든 물질에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취급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여기에 기술된 위험성 이외에 다른 위험들이 잠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